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* 미소노인복지센터 / 2025년 기준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

☆ 계약목적

1.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2.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☆ 계약기간

1.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2. 등급 변동 또는 갱신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5. 1. 1 기준)

○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40,650	37,630	34,740	33,160	31,580	31,58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4,490	50,470	46,590	45,000	43,400	43,40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7,770	62,780	57,960	56,380	54,780	54,780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74,660	69,160	63,900	62,290	60,710	54,780
13시간 초과	80,060	74,170	68,520	66,930	65,350	54,78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

구 분	재가 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, 저소득층	9%, 6%

○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

비급여 항목	비 용(원)
식 비 (3회 / 일)	5,000
간식비 (1회 / 일)	500
기타물품	개인 부담

☆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. 권리

-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,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
-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,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
2. 의무

-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무
-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-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
☆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

1.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때
- ②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때
-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